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 교통위원회 【2019. 6. 17.(월) 10:00】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 시·교 통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19년 6월 17일 전문위원 이 광 희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: 2019 - 29

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
다. 제 출 일: 2019년 6월 3일

라. 회부일자: 2019년 6월 11일

2. 제안이유

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하고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지원 금액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(복구지원과-2381, 2018.07.26.)의 조례 표준안 변경 통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에 대한 사항 신설(안 제64조)
- 나.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 신설(안 제64조의2)
- 다. 구상에 따른 책임 조항 신설(안 제64조의3)
- 라.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 지원 적용 부칙 신설(안 부칙제2조)
- 마. 그 밖에 표준 조례안 반영 용어나 표현 등 정비(안 제64조~제6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의사항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19. 4. 24. ~ 2019. 5. 14.) 결과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취지

이 개정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여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 금액과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됨.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1) 안 제64조제3항: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에 대한 사항 신설
 - 통상적 비용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추가
 - 구체적 지원 기준과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
- 2) 안 제64조의2: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 신설
 - 구청장은 재난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금액 등 비용 전부를 원인제공자에게 청구
- 3) 안 제64조의3: 구상에 따른 책임 조항 신설
 - 원인제공자는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대항할 수 있고 초과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
- 4) 안 부칙제2조: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 지원 적용
- 이 조례안 제6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

5) 안 제64조~제69조: 그 밖에 용어 및 조문 등 정비

- 개정된 표준 조례안 용어를 반영하고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조무 정비

다. 종합의견

이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기준에 대한 행정안전부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」에 따라 구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관련 법령

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)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(제65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 다만, 제39조제1항(제46조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자연재난
- 2.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
-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·의연금 등으로충당하되,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·도 및 시·군·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,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,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1. 사망자·실종자·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
- 2.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
- 3.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
- 4.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·임업인·어업인의 자금 융자, 농업·임업·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
- 5.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
- 6.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·지방세, 건강보험료·연금보험료, 통신요금,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
- 7. 주 생계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(鹽生産業)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
- 8.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
- 9.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
-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①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·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□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3조(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)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.

- 1. 생활안정지원: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(이하 "재난피해자"라 한다)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
 - 가.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
 - 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
 - 1)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・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
 - 2) 농업 · 어업 · 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
 - 다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
 - 1)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
 - 2)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
 - 3)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
 - 라.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
 - 마.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
- 2. 간접지원: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
 - 가.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및 염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
 - 나.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
 - 다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
 - 라.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
 - 마. 국세·지방세. 건강보험료·연금보험료.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
- 3. 피해수습지원: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가. 공공시설의 복구
 - 나.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
 - 다.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
 - 라.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등의 추모사업
-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(이하 "생활안정지원"이라 한다)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(이하 "피해수습지원"이라 한다)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4조(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) ①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필요한 국고와 지방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실제 비용과 피해금액 등을 기초로 별표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확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